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DOUZONE

동아대학교와 더존ICT그룹의 동반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협약서

동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더존ICT그룹(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이 교육·연구 혁신과 창업 및 기술 사업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각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① “대학” 학생의 현장 실습 및 인턴쉽 기회 제공 등 인력양성 지원
- ②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실무 협력
- ③ 최신 IT정보기술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교류
- ④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학 협력
- ⑤ “대학”과 “기업”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교류 및 컨설팅
- 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제4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 본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운영) 본 협약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실무부서 및 실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사항) 이외에 본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양 기관”은 상기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6월 16일

동 아 대 학 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

총 장 한 석 정

한석정

더존 ICT 그룹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회 장 김 용 우

부사장 이 중 현

이중현